
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

2021. 4.

금 융 위 원 회

I .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경과 및 성과 ..	1
1. 그간 운영 경과	3
2. 그간 성과	6
II . 향후 운영 계획	3
1. 기본 운영방향	3
2. 분과별 운영계획	4
1) (분과1) 플랫폼·오픈뱅킹	6
2) (분과2) 규제혁신	7
3) (분과3) 데이터공유	8
4) (분과4) 금융보안	9

1.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경과 및 성과

1 그간 운영 경과

-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
 - 디지털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첨예한 이슈들이 등장하며, 금융·경제 부문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증대하는 상황
- 금융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규제체계의 정합성, 금융의 플랫폼 종속 우려,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
 - * 기존 규제체계가 빅테크사의 영향력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"기울어진 운동장" 등 규제의 형평성 이슈 제기
 - 특히, 각국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 규제 마련에 나서는 상황
-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를 구성·출범('20.9.10)
 - 민·관 합동으로 금융권, 빅테크/핀테크, 전문가, 노조 등 각계 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여 최신 이슈를 집중 논의
 - 거시적 주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다양한 세부 주제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논의

- * (제1차)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출범, 정책 방향 제시 ('20.9.10)
- (제2차) 플랫폼 경쟁질서(토의), 인증·신원확인제도(토의) ('20.9.24)
- (제3차)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(발표), 빅테크/핀테크 현장 개선과제(토의) ('20.10.21)
- (제4차) 마이데이터 주문정보 등 공유방안(토의) ('20.11.12)
- (제5차) 금융부문 규제차익 해소 방안(발표) ('20.12.20)
- (제6차) 핀테크·빅테크 규제개선(발표), 샌드박스 운영개선(발표) ('21.2.9)

2 그간 성과

- 그간 단기간 내 압축적 운영을 통해 기존 금융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도 폭넓게 고민
 -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되,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의 금융혁신을 촉진
 - *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, 좁은 제도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적 균형점을 모색
 - 여러 업권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
 -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
- **(정책발표)** 그간 디금융 협의회를 통해 심도깊게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릴레이로 대외 발표
 - 금융 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「금융분야 인증,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」을 논의·발표(2차)
 - * 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,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
 - ②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
 - 디지털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확장성·상호주의·안정성 관점에서 「오픈뱅킹 고도화」방안 발표(3차)
 -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「마이데이터 3가지 원칙*」 논의 및 정보공유 관련 쟁점도 함께 토의(4차)
 - * ①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②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
 - ③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
 - 그간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「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」을 논의·발표(6차)
 - * 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개선
 - ③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

- **(규제개선)** 수요자 중심 상향식 접근을 통해 건의 과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
 - 금융권이 제기한 규제차익 이슈 전반을 해소(5차)하고 핀테크 업계 등에서 원하는 규제완화 과제 해소(6차)
 - 「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」 원칙을 적용하고,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 - * ①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②금융회사-핀테크 간 협업촉진
 - ③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제도개선 추진
 - 그간 여러 차례 금융사·핀테크·빅테크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건의과제 중 92건 수용(26건 중장기검토)
 - * (5차) 건의과제 62건중 40건 수용 및 15건 중장기검토
 - (6차) 건의과제 74건중 52건 즉시개선 추진 및 11건 중장기 검토
 - 현장건의의 수렴을 통한 규제개선뿐 아니라 규제개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시적·포괄적인 규제 개선 체계 구축
 -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민간 주도형 규제개선 체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한 내실화 종합방안 마련(6차)
 - 핀테크 사업 영위와 관련한 ①순단계별 규제개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②(가칭)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 추진
 - * ①사업화前 아이디어 실험(디지털 샌드박스) → 사업화 테스트(샌드박스) → 규제개선 검토
 - ②(가칭)핀테크육성지원법 추진을 통해 핀테크 육성에 저해되는 출자규제등 개선검토
 - **(리스크 점검)** 그간의 지속적 금융혁신 추진으로 거시적 영향의 고려가 중요해짐 →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사항을 다층적 고려
 -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 쏠림 현상,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점검
 - 아울러,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영향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함께 점검
- ⇒ 그간의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의 질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성과 창출

2. 향후 운영 계획

< 기본 운영방향 >

- ◇ 디지털금융협의회(디금협)를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
- ◇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확대·개편한 후 상시적·주기적으로 운영

- ① 디지털금융 관련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의 구성 (주제별로 4개 분과로 나누고, 각 분과별 5~6명으로 구성)
 -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·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되, 핀테크업계 의견 반영채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

※ 분과회의의 구성(안)

- ① (분과1 : 플랫폼·오픈뱅킹)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, 오픈뱅킹 고도화 등
- ② (분과2 : 규제혁신)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,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
- ③ (분과3 : 데이터공유) 마이데이터 정보공유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
- ④ (분과4 : 금융보안) 전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

- ②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,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
- ③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「금융발전심의회」에 상정하여 소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
- ◇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, 향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구체화
- ◇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* 국회 통과시, 디금협은 디지털금융 분야의 안정과 혁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법률상 회의체 化

*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관석 의원, 20.11월) 제4조의3

① **(플랫폼을 통한 금융혁신 활성화)** 국내 플랫폼의 혁신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, 상반기중 플랫폼 활성화 방안 수립·발표(~6월)

※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

① **(플랫폼 금융 활성화)** 중소·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

※ 플랫폼 금융(platform finance) :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하여, 담보·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

- 금융결제원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상거래 매출채권 관련 데이터를 플랫폼 매출망 금융사업자에 개방
- 플랫폼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, 초기시장 성장 지원을 위한 보증·보험 상품 등 개발

※ 플랫폼 금융(예시)

- ① 거래증빙 등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 어음할인, 매출채권 유동화, 외담대 등 상거래매출채권 기반 자금지원 활성화
- ②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, 카드결제,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, 소규모 사업체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

② **(전통 금융사의 플랫폼 사업 지원)** 금융권의 플랫폼 사업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(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추진)

-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, 고의·중과실 없는 임직원 등 면책

➔ 「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」을 단순히 법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의 실질적 육성이 이루어지는 방향*으로 추진

* (예)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

②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

: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규제사항 등 정비

① 전금법 개정안 조속 입법화 + 금융플랫폼 규율 가이드라인 마련

- 국회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, 법개정 전이라도 규율체계 조기 수립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
- 전금법 개정안 취지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활성화 필요성,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化

② (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) AI를 접목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토록 가이드라인 마련

③ (규제동향 파악) 금융 플랫폼 관련 국내외 규제가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전문가·업계 의견 수렴*

※ 일각에서는 플랫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담은 입법화 우려도 제기

④ (소비자보호 지속)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되, 감독 차원에서 필요시 수시 대응 방안 논의

⇒ 플랫폼을 통한 금융혁신 활성화 필요성과 규제 필요성 양쪽 모두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추진

③ (오픈뱅킹) 「오픈뱅킹 고도화 방안」 추진현황 외에도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, 해외 주요국 동향조사·연구결과 등 논의

① (「오픈뱅킹 고도화 방안」 추진현황 점검) 제2금융권 참여 확대, 데이터 상호개방, 보안점검·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성과 점검

② (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안 검토) 신산업·서비스와 연계,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향후 예금·대출·금융투자·보험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발전방안 모색

* (예) 휴면예금, 각종 환급금 등의 조회시스템 등에서 오픈뱅킹 이체 API를 통해 원스톱 환급·이체가 가능하도록 연계

③ (오픈뱅킹 관련 조사연구) 오픈뱅킹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및 시사점, 국내 오픈뱅킹 발전방향 등 조사·연구결과 공유

분과2 [규제혁신] 디지털 샌드박스,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

① **(가칭)디지털 샌드박스**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가 혁신적인 기술·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조성

① **(운영 관련)** 시범사업(~9月) 경과보고,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 필요성,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

② **(과제해결 모색)** 핀테크 기업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분야 과제*의 해결모색(필요시 규제개선, 신규제도 도입 검토)

* (예시) 금융사기 탐지 및 방지, 취약계층 금융 지원,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

※ 향후 구성 예정인 「(가칭)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위원회」(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, 유관기관전문가 참석) 논의를 거쳐 디금협 규제혁신 분과회의에서 논의 예정

② **(규제개선 체계 구축)** 제도화된 규제개선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운영

① **(체계 내실화)** ‘디지털샌드박스(사업화 이전)-샌드박스(사업화)-규제개선*(사업화 이후)’ 3단계에 걸쳐 보다 내실화 있게 운영

- (샌드박스 단계) 분기별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을 점검하고, 일정 조건*을 충족하는 서비스는 규제개선 검토에 착수

* (예시) 서비스 출시후 6개월 경과, 금융소비자 피해 미발생 등

- (사업화 이후 단계) 최근 도입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*와 관련하여, 하위법규 개정 및 운영체계 마련

* 최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(21.3월)으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제 도입

② **(다양한 채널 활용)**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샌드박스과 연계된 규제개선 검토

- (현장소통 확대) ‘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’ 등을 통해 제기된 금융회사·핀테크 기업*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과제 발굴

* 「디지털금융협의회 분과회의」 및 「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」 개최 및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(21.上), 핀테크랩 입주 핀테크 기업(21.下) 방문 예정

분과3 [데이터공유] 마이데이터 정보공유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

1 (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)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 전송기반 구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

1 명확한 동의 원칙에 기반한 이용 양식을 마련하는 한편,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* 추진

* 개인신용정보의 손쉬운 삭제요구 및 삭제에 대한 사후관리

2 정보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*와 보안취약점 점검**도 추진(금융보안원)

* 신용정보법령상 정보보호등 행위규칙 준수여부, 표준API 규격 적합성 검증

**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 시스템 일체에 대해 연1회 이상 보안성 검사

3 관계부처 협의 및 마이데이터 TF 운영 등을 통해 제3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등이 없는 범위에서 제공정보 확장 추진

* (예) 마스킹 등을 활용하여 제3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요정보 제공가능 여부 등 검토

※ 4차위 등과 협조하여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금융영역과 비금융영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

2 (데이터 인프라 구축) 빅데이터 결합·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추진

1 (금융권) 신정원, 금결원,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통합 조회·결합·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(「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(FinDNet : Financial Data Network)」)

- 금융권이 보유한 데이터 종류, 의미, 데이터간 연관관계 등을 안내하는 “금융권 데이터 지도(data map)” 도 구축 추진

2 (금융+비금융권) 「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」와 민간·이종산업(금융外) 분야에서 데이터 인프라 간 데이터 융합 등 추진

- 금융+비금융정보 결합·활용을 통한 신용평가모델 고도화, 융합 新산업·서비스 개발을 지원

분과4 (보안)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

- ① **(보안원칙 변화)** 보안전략을 규정중심(Rules-based)에서 원칙중심(Principles-based)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IT환경에 신속히 대응*
* 법률에서는 금융보안에 대한 일반원칙과 상위기준 제시하여 기업들의 규모·역량·책임부담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마련하도록 보장
- ② **(인증·신원확인 개선)**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절차·요건 등을 마련*
* 정보조회, 소액이체 등 저위험거래와 대출·고액이체 등 고위험거래를 구분하고, 거래위험도에 따라 인증·신원확인 절차·요건 등의 차등화 방안 구체화
- ③ **(망분리 합리화)**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, 개발·비금융업무 등에 대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* 논의
* ①망분리 규제 예외에 대한 샌드박스 운영성과, ②재택근무 목적의 망분리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안전성·실효성·사고우려 등을 다각도로 분석
- ④ **(제3자 리스크 관리)** 클라우드, 전자서명 등 IT아웃소싱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리·감독 범위* 마련
* 금융권 주요수탁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, 주요수탁자의 처리업무, 기업 규모, 빈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안전성·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

◇ 금융보안은 단순 IT리스크 관리가 아닌 금융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 → 새로운 보안전략 필요

* 현행 「전금법」상의 금융보안규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금융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

◇ 「전금법」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보안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회사·핀테크·전문가 등과 워킹그룹을 운영

➔ 보안분과에서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「전금법」 개정시 하위규정(시행령·감독규정 등)에 적절히 반영